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주요 Q&A

2021.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1. 방문시설 배정	3
2. 사업수행계획 수립	5
3. 예술인 고용보험	11
4. 보조금 집행	15
5. 사업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	16
6. 코로나19 대응	18
7. 사업홍보	20
8. 사업 평가 관련	21
9. 부정수급	22
10. 사업 개선관련 의견	24
11. 기타[추가 교육이수 등]	26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주요 Q&A

1 방문시설* 배정

* 2021년 사업부터 기존 '순회처'라는 명칭을 '방문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

1. 추가 모집하는 방문시설은 어디이며, 언제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나요?

- 방문시설 모집은 3/10(수)까지 진행되었으나 수요가 미달된 10개 시설유형에 한하여 3/19(금)까지 모집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방문시설 2차 추가모집 계획은 현재 까지 미정입니다.

※ 모집기간 연장 시설유형

유형	시설
아동청소년	아동양육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국민일반	노인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아파트
특수	교정시설, 병원, 산업단지

2. 방문시설 매칭 결과 공지 날짜는 언제인가요?

- 당초 3월말 신나는예술여행 누리집을 통해 최종 매칭결과를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유형의 방문시설 모집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월 초에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3. 한 단체 당 배정받는 시설 개수는 몇 개인가요?

- 배정횟수는 단체 당 10회를 기준으로 하되, 각 예술단체에 대한 방문시설의 신청 결과에 따라 10회보다 많거나 또는 적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모단계 때부터 공지해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예술단체가 최소 수준은 배정되는 방식으로 매칭할 계획입니다.

4. 예술단체가 직접 방문시설을 발굴할 수 있나요?

-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은 사업 운영방식을 '매칭형'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방문 시설 모집은 예술위원회와 협력기관에서 진행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예술단체가 직접 발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회관을 방문시설로 발굴해도 되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예술단체가 직접 방문시설을 발굴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예술단체의 직접 발굴을 허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을 방문시설로 우선 설정할 예정이며, 노인회관으로의 방문시설 확대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검토·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올해 방문시설 목록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은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기 위해 여러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267개소의 아동양육시설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관람대상은 방문시설 모집 상황에 따라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8. 병원 모집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신청접수 시에는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방문시설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3/19(금)까지 진행되는 연장 모집 시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사업수행계획 수립(예산,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

1. 국고보조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정된 은행이나 카드가 있나요?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는 예술단체 신용도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필수로 합니다. 사무처에서 별도 지정한 카드사는 없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고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2020.12.31.기준)

- 신용/체크카드 : 광주,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전북, 경남, 부산, 제주, 기업, 하나, 국민, SC제일은행
- 신용카드만 가능 : 대구, 롯데, 삼성, 현대
- 체크카드만 가능 :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신한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2장 이상) 발급도 가능하오니 집행 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예술단체께서는 발급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계획 수립】

2. 신청 예산과 달리 사업예산이 축소된 경우, 언제까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지원신청금액과 선정금액이 달라 예산변경을 해야 합니다. 예산수정은 언제 하면 될까요?

□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예산변경 신청 절차 없이 1차 교부신청 시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부신청 이후 예산변경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예산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책정된 지원금에 맞게 조율해서 사용하면 되나요?
- 5. 삭감된 지원금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짜야하는데 그럼 이전 지원서에 작성된 예산과 내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6. 심의 후 책정된 예산의 범위(금액, 항목)안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한다면 인건비가 다소 변경되어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결정된 지원금 내에서 각 항목별 예산을 재조정해주시면 됩니다. 단, 사례비를 지나치게 높게 편성하는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조정된 예산액에 맞춰 예산계획을 다시 수립하신 후 사업담당자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7. 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전체 회차 총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1회차 당 예산을 고정으로 지원결정된 금액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방문시설 500만원, B 방문시설 450만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총 예산에만 맞추면 되나요?

각 회당 소요예산이 1회당 지원결정액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지원결정액 안에서 배정된 회차를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주시면 됩니다.

- 8.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예산을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산수정에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메뉴얼, 재작성 시기 등 예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 교부신청 등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운영 매뉴얼은 지난 3월 첫째 주 각 예술단체 담당자 메일로 발송해드렸으니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이후 발생한 수정사항의 경우 해당 내용 반영하여 수정된 매뉴얼을 재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진행 시 담당자들이 수시로 메일,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비】

9. 작품 공연을 위해 실제 참여했으나 현장에는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지원신청 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통해 행정 담당 인력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의 사례비는 매 회차 현장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현 지침 상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례비 지급은 불가하며, 세부적인 사유나 상황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한 사람이 연주와 기획, 행정 업무를 다 하는 경우 사례비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 괜찮은가요?

11. 지금 요구되는 추가적인 업무들이 제법 상당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례비는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앞서 답변 주셨고, 운영 매뉴얼 상에는 과도한 사례비 예산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을 많이 하더라도 사례비를 증액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과도한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12. 예술가가 행정, 기획 등을 겸직하고 있을 때 사례비를 예술가/행정/기획 등 각개로 편성하여 지급하나요?

-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 각 역할과 업무에 대한 사례비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하여 교부신청서 내 참여자 명단에는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사례비 집행 시에는 일괄적

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참여자가 기획 업무와 연주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교부신청서 내 참여자 명단에 다음과 같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시1>

역할		성명	생년	성별	현소속	섭외여부
구분	세부					
1	기획	A	1971	여	☆☆뮤직	확정
			○ 2017~2020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016~현재 ☆☆☆뮤직 대표			
2	출연진	A	1971	여	☆☆뮤직	확정
			○ 2017~2020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016~현재 ☆☆☆뮤직 대표			

<예시2>

역할		성명	생년	성별	현소속	섭외여부
구분	세부					
1	기획, 출연진	A	1971	여	☆☆뮤직	확정
			○ 2017~2020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016~현재 ☆☆☆뮤직 대표			

- 1가지 업무에 대해서 사례비를 지급하시라는 의미는 2가지 업무를 수행함에도 1가지 업무에 해당하는 사례비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의 업무에 따른 적정한 사례비를 지급하시되, 사례비를 나누어 집행하시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 과도한 사례비의 기준은 기재해주시는 담당 역할의 비중, 예상되는 업무량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특정 기준을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선비】

13. 단체 자체 조명, 무대 등 사용 시 해당 물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수선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예술단체 자체 보유 장비 활용 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수용비-수선비]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 14. 극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야할까요?
- 15. 예산에 악보 저작권료 등으로 예산책정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료 또한 편성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인 책정 기준 등은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돌봄비】

- 16. 영유아 돌봄비는 가족에게 편성 가능한가요?

네, 자녀를 돌봐주는 대상이 가족이라면 지급 가능합니다. 단, 돌봄비를 신청하는 예술가 본인에게는 지급 불가합니다.

【임차료】

- 17. 음향 임차비를 예술가 사례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보조금집행 계획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무대기기 임차비용을 사례비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무대기기 (조명, 음향 등) 대여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임차업인 업체와 거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교통비】

18. 현장 답사 교통비 등은 예산 집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부금 집행 전에 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어떻게 비용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은 보조금 사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전답사는 사업담당자와 교부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확정 및 e나라도움 1차 교부신청 이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19. 계약서는 회당이 아닌 전체사업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가급적 참여자별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체사업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나, 참여자별 일정 변경이 잦을 경우에는 예술단체 상황에 맞게 회당 또는 분기별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단, 계약서는 계약대상자의 프로그램 수행일 이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20. 회차당 계약을 하면 회차당 인원이 바뀌어도 된다는 건가요?

- 프로그램 진행 회차별 참여자 구성이 다르다면, 변경되는 인원 에 대해서는 회차당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 질의 창구)	02-2097-9250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홈페이지	http://artinsure.kawf.kr/

1. 지원사업이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0.8% 비용은 대표자 자부담인가요?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중 예술단체 부담분(0.8%)는 [일반수용비 - 보험료]에 편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참여 예술가가 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인 경우에도 예술인고용보험을 프리랜서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요?

3. 출연자 중 다른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사례비를 집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①선정단체 대표자, ②선정단체에서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정규직원, ③만 65세 이상 출연자, ④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며 월평균사례비(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출연진, ⑤단순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제외한 참여진(기획행정, 기술지원, 실연자 등)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예술인고용보험 외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참여예술가들의 산재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출연진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 가입사항으로 안내하는 안전보험(여행자보험/행사보험/상해보험/예술인산재보험) 중 하나의 보험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5. 책정된 예산에서 또다시 1.6% 보험료를 편성해야 하나요?

- 예산계획 수립 시, 예술인고용보험료 단체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를 0.8%)을 별도로 편성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0.8%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연진 사례비에서 원천 공제합니다.

6. 사업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일반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차별로 계약해서 단기보험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일반고용보험’은 예술인고용보험이 아닌 기존의 고용보험을 염두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서 임의가입(의무가입)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일반 고용보험까지 가입여부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①선정단체 대표자, ②선정단체에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정규직원, ③만 65세 이상 출연자, ④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며 월평균사례비(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출연진, ⑤단순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제외한 참여진 중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수행기간(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월평균사례비) 50만원 이상일 때에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기계약(1달 미만)일 경우, 월평균소득(월평균사례비)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7.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신나는예술여행에 선정된 다른 단체에도 출연하는 출연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참여하는 단체마다 각각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각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마다 중복으로 가입이 됩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여러 선정단체에서 출연계약을 맺고 참여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설명 드린 내용처럼 각각의 계약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8. 고용보험에 들면 일반 프리랜서들은 나중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4차 재난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확정 발표될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9. 이미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을 포함하여 보조금 사업 건마다 예술인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2중, 3중으로 가입이 될 텐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마다 의무 가입의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자체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자체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예술인(출연자) 이 사례비 받은 후에, 보험료 0.8% 금액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에서 미리 공제하고 사례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 원천세 처리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체에서 예술인고용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사례비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11. 스태프도 예술인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 스태프의 소속, 연령, 소득구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단체에서 4대 보험을 지원받는 정규직일 경우, 그리고 선정단체에서 임차계약 또는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세(사업소득, 기타소득)를 제하고 사례비를 받는 스태프일 경우에는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12. 고용보험료 계산 시 ①출연료(원천세 포함) $80\% \times 0.8\%$ 인가요? 아니면 ②출연료(원천세 미포함) $80\% \times 0.8\%$ 인가요?

- 총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원천세를 포함한 세전 출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①번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방식은 별도로 제공해드린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 집행

1. 전체 계산금액만 나오는 식당이 많은데 식비 영수증에 세세한 음식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 식비 사용 시에는 세부내역(구입품목, 단가, 수량)이 확인 가능한 카드영수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영수증의 경우에는 세부거래 내역서를 추가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2. 저희는 법인(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부가세를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에 보조금이 들어오면 매번 지출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면 저희 자체 통장에서 그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야 하나요?

- 네,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보조금을 통한 매입 부가가치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과세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식은 2021 신나는예술여행 운영매뉴얼 내 [일반과세사업자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업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

1. 사업 전 인원변경과 사업 진행 중 인원변경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나요?
2. 사업 계획(지원신청) 당시 등록된 예술인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참여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변경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절차는 사업운영 매뉴얼 내 [사업계획 변경하기]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금 정산 보고서는 공연 회당 작성하나요? 아니면 모든 회차가 끝난 후 한 번에 작성하나요?

보조금의 정산은 전체 사업수행을 완료하신 이후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역시 사업수행 완료 후 한 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 회차 종료 후에는 회차마다 진행하신 결과와 실적에 대하여 '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즉 매 회차 진행결과보고서는 매 회차마다, 연도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연 1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프로그램 진행결과 보고서 영상 제출 관련 문의

영상 제출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만큼 단체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질문 사항을 경청하여, 많은 부담을 드리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재배포해드리는 사업운영 매뉴얼 내 [3-2. 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상촬영 후 제출할 경우 초상권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 우선 제출해주시는 영상은 사업수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 출연진을 대상으로는 해당 영상촬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라며, 관객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 시작 전 아카이빙 영상 촬영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객의 얼굴 전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6. 교도소의 경우는 촬영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부인의 출입이 민감한 시설(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의 경우, 영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고, 전문 평가위원이 직접 사업현장에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회차가 취소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취소된 회차만큼 진행이 가능한가요?

-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1년 3월~12월이며, 현 시점에서는 2022년으로의 사업 이월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방역용품은 손세정제/온도체크 정도 준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방문시설 측에서 소독방역까지 원하시면 단체에서 모두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과 방역은 어느 한 쪽의 몫이 아닌 방문시설과 예술단체가 협조하여 진행해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원회에서는 각 방문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소독과 방역 조치를 취해주실 것에 대해 협조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예술단체께서는 사전협의나 점검 과정에서 방문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협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역물품 지출에 대한 보조금 추가지원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심의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비용도 감안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송출 공연 형태의 진행은 가능한가요?

- 사업공고 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대면 공연 진행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공연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신나는예술여행이 가진 강점은 사회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실황' 예술 서비스라는 점에 비추어, 우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향후 3분기까지 추진 현황 추이를 보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할 경우 전환 여부를 협의 및 결정할 계획입니다.

5. 신청 예산보다 지원금이 많이 삭감되어 결정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진행시 영상 촬영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하반기에 비대면 공연을 진행해야할 경우, 실질적인 영상 비용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업 지원신청 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실행방안을 작성하신 바 있듯이 비대면 형식에서의 전환은 사업 공고 시 안내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비, 여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이 절감됩니다. 상기 예산항목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영상 촬영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21년 사업 수행 시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추후 별도 지침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홍보물(X배너 또는 현수막)은 각 회차별로 제작해야 하나?

- 아닙니다. 회차별 제작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매칭된 방문시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작해주시면 됩니다.

2. 창의적 홍보물 제작을 위해 디자인 사례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 홍보물은 배포해드린 '2021년 신나는예술여행 홍보 매뉴얼'을 준수하여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홍보물 템플릿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 평가 관련

1.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는 해당 단체들에게는 따로 통보해주시나요?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는 신나는예술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 사업 운영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평가 심사위원 또는 사업담당자가 참석하나요?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위원회 사업담당자 또는 평가위원이 사업현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1. 식비를 각출하여 사용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지불하는 방식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 참여자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되돌려 받는 행위, 즉 '페이백(payback)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페이백 행위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계약 내용에 반하여 부당하게 참여자의 사례비를 돌려받거나(편취),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집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비 등 여비를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정수급 사례로 지적되었다고 해주셨는데, 참여자 개별 자차이용 등 사업비 직접집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문의주신 사항은 개별적인 세부 정황 및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표자와 참여진이 가족관계일 경우 상관없나요?

- 참여자 또는 거래업체 대표가 가족 관계인 것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중 가족을 참여자에 허위로 포함시키거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 등을 허위·과다 책정하여 이익을 편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가족 간 거래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탐지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부정 집행 조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증빙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4. 출연진(연주자)가 음향악기 임차 사업자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전국단위 임차를 해야 한다면 과연 신청보다 축소된 예산 안에서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5. 저희는 음향 감독님께서 회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곳과 음향 장비 임차 관련 계약을 체결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과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내 금액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스태프 관련 업체와 계약 사양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계약이 어려운 사례인가요?

- 출연진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래 역시 임차료 등을 허위·과다 책정하여 이익을 편취한 사례가 과거 다수 적발되어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서는 출연진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형태의 거래 역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증빙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6.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아는 업체에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 예정, 이와 같이 특수품을 직접 관련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주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나는 예술여행은 창작지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연단체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치룬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건가요?

- 제안해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준 높은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작과정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고,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의 기본 방향 중 하나가 신작 창작 후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우수 작품(레퍼토리)를 서비스한다는 것이므로 창작 단계에 대한 보상이 여의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적으로 공연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연료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공연단체들이 지원에 대해 감사하지만 공연을 하고 정산까지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고 여기에 실사 등의 경비와 회계 수수료까지 들어가며 정산하는 기관의 수고로움까지 생각하면 소모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3. 식사비 포함 사례비에 대한 부정방지는 공감되나 공연 당일 이동차량, 경로, 환경, 식성 등에 따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연 자체 보다 모여서 카드를 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페이백에 대한 강력한 징벌과 신고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요?

- 말씀해주신 제안과 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내용의 특성 상 당장 사업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 등을 위한 논의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다른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른 강화된 조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매년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적발되고 있어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예술단체 여러분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 예방교육(의무 이수교육)은 오늘 라이브교육 외에 추후에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예술위원회는 보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단체의 모든 참여 예술인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업 오리엔테이션 때 참여한 분들은 참여등록 증빙으로 이수 증명이 되었습니다.
-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된 교육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교육 자료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의 추가 교육이수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본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다시 보기가 가능한가요?

- 사업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1부(사업 소개 및 시설 매칭) : <https://youtu.be/WySX7baJ4ig>
 - 2부(단계별 준비사항) : <https://youtu.be/3Sx8IPLhSfw>
 - 3부(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기준, 사업변경, e나라도움 사용) : <https://youtu.be/QNqYOLpaXSI>

3. 지난해처럼 <사업 운영 매뉴얼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 주시나요?

- 올해는 파일(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세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매뉴얼을 갱신하여 공유(신나는예술여행 홈페이지 게시)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